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또한,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기준」에 맞춰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
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,
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
여비 지급 조례」 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.

그리고 「알기 쉬운 법령 기준」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
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